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자 료</b>		
	보고	배포 즉시	배포 2019. 11. 15.(금)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이성호 팀장(3145-8521), 장종현 선임(3145-8534)	

**제 목 :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 
광고를 조심하세요! - 소비자경보 「주의」 발령!**

■ 소비자경보 2019-3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이용자(구직희망자)		

**1 소비자경보 「주의」 발령 배경**

◆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,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를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

- 최근 문자메시지, 온라인 커뮤니티·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“해외송금 알바”에 지원하였다가
  -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\*함에 따라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

\* '19.1월~10월 동안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,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

**2 보이스피싱 수법**

- 해외 구매대행업체,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~10%,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

-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
-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, 베트남,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(계좌)에 모바일·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
-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

###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◆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담 정도·횟수,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

1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

- 송금·환전·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의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
-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·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

2 채용상담·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, SNS\*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, 통장·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

\* 일반적으로는 채용·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·이력서 등을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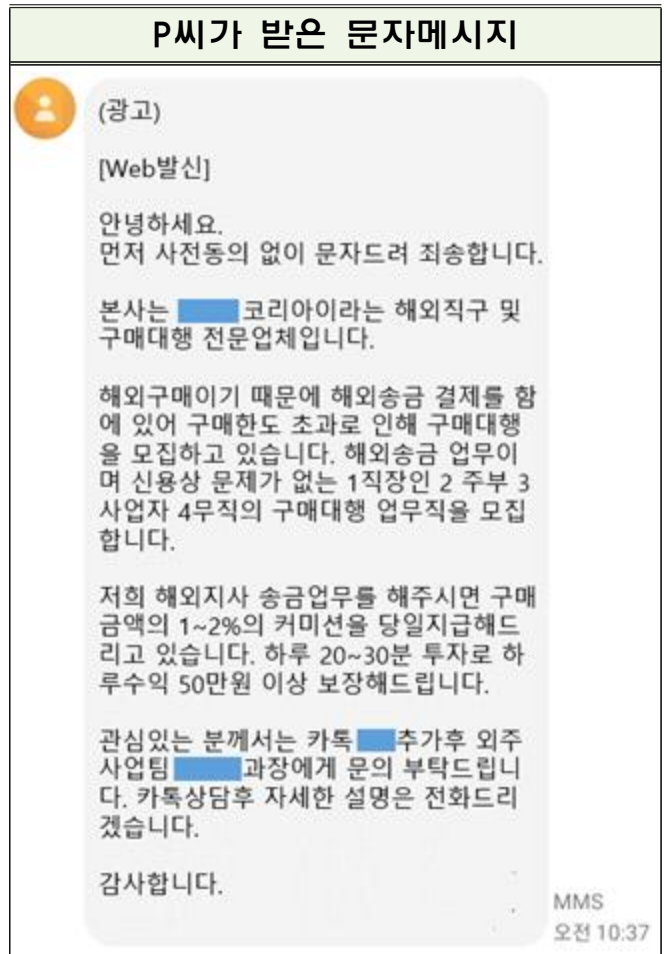
※ <붙임>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□ 회사원 P씨(36세, 남)는 '19.10월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,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

○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K씨는 P씨에게 “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 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”고 설명

○ 또한 “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,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”이라며 안심시킴



□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%,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

○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,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,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됨